

2023년도 『IP서비스기업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』 지원기업 2차 모집공고

대전광역시와 (재)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의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신규 창업 촉진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「IP서비스기업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」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4월 28일

대전테크노파크원장

1 사업목적

○ 지식재산(IP) 서비스 기업의 신규창업 촉진, 기업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및 지식재산 허브도시 기능강화

* IP 서비스 업종 : 변리사, 자료처리업, 경영컨설팅업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, 디자인업 등

2 지원대상

○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대상 업종 기업 중

○ 2021.01.01. 이후 대전에서 신규 창업하거나, 사업장을 대전으로 이전한 기업

※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대상 업종

한국표준산업분류			
코드	세세분류업종명	코드	세세분류업종명
63111	자료 처리업	73202	제품 디자인업
63120	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	73203	시각 디자인업
71102	변리사업	73903	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
71400	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	73909	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71531	경영컨설팅업		

3

지원내용 및 규모

- **(IP 검색관리시스템 지원)** 기업 당 지원사업비 8,000천원 이내 3건
 - IP 검색시스템 : KEYWERT, WIPSON, WINTELIPS, Totalpatent 등
 - IP 관리시스템 : XPAT, Patent CRM 등
 - * 시스템 공급기업과 2023년에 계약한 1년 단위 계약 건에 대해 이용료 지원
 - * 대전TP↔지원기업 협약 체결 전 지원기업과 시스템 공급기업 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고, 지원기업이 공급기업에 사용료 전액(부가가치세 포함) 지급 후 협약 체결 시 관련 자료 첨부

- **(제조업 상생프로젝트 지원)** 프로젝트 당 지원사업비 20,000천원 이내 2건
 - 특허분석지원 : R&D전략 수립, IP확보전략 수립, IP분쟁대응 전략수립
 - 지식재산 컨설팅지원 : 특허자산을 활용한 IP경영전략 제시·사업화 컨설팅
 - 경영컨설팅 지원 : 신상품 기획, 경영상태 점검 등
 - * 참여기업(제조업)은 대전지역 제조업 기업만 참여 가능

- **(지원기간)** 협약일로부터 ~ 2023. 10. 31.일 까지

- 기타사항
 - 기업부담금 : 지원사업비의 10% 이상 + V.A.T.

4

접수방법 및 문의처

- 공고기간 : 2023.04.28.(금) ~ 05.12.(금)
- 접수기간 : 2023.05.08.(월) ~ 05.12.(금), 18:00시 까지
- 접수방법 : (재)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(DIPS) 온라인 등록
 - 온라인 주소 : <https://www.dips.or.kr/>
 - * DIPS 시스템 및 PMS 시스템에 동시 공지 예정
 - 사업 접수는 상기 온라인 등록으로만 진행되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절차는 없음

- * 온라인 등록 시 아래 (6. 제출서류) 확인 후 필수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
- *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 순서대로 압축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첨부 등록
- *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 제출이 기본 원칙이며, 용량과다로 업로드 불가 시 PDF로 변환 후 온라인 등록 및 담당자 연락 필수
- * DIPS 사이트의 온라인 공고 하단 신청 버튼은 접수 시작일(05월 08일)에 활성화되며 이전 공고기간 중 온라인 회원가입, 사업계획서 등 양식 작성, 제출 서류 취합 등 사전 준비 요망
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접속 (https://www.dips.or.kr/)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회원가입 및 로그인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온라인접수(해당사업 공고 신청)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과제신청 후 각 내용 입력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제출서류(압축파일 1개) 첨부 후 등록완료 / 최종 신청완료 확인</div>	<p>※ 온라인 등록 유의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접수마감시점(5월 12일(금)) 18시에 자동 마감되기 때문에 마감시간 전 반드시 온라인 등록 완료 확인 ② 온라인 접수 관련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(dips.or.kr) 참조 ③ 등록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④ 온라인 접수 에 문제점 발생시 담당자 즉각 연락 요망
---	--

○ 사업문의 : 대전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실 기술사업화팀

기관명	담당자명	전화번호	이메일
대전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실	임종일 책임	042-930-4814	jilim11@djtp.or.kr

5

추진절차 및 일정

추진내용	추진기관	일정
① 공고 및 접수	대전TP	04.28 ~ 05.12
▼		
② 공모과제 선정평가·선정통보	대전TP↔신청기업	5월 중
▼		
③ 협약체결	대전TP↔선정기업	5월 말 ~ 6월 초
▼		
④ 사업수행	지원기업, 수행기업→대전TP	6월~10월
▼		
⑤ 중간점검 및 진도관리	지원기업, 수행기업→대전TP	8~9월 중
▼		
⑥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	지원기업, 수행기업→대전TP	10월~11월
▼		
⑦ 지원사업비 지급	대전TP→지원기업, 수행기업	11월
▼		
⑧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	대전TP	12월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6

제출서류(온라인등록)

○ 2023년 IP서비스기업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사업 온라인 접수 등록 서류

No	제 출 서 류	비고
1	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【서식 제1호】 / 파일 등록	필수제출
2	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【서식 제2호】 / 날인 후 스캔 등록	필수제출
3	지원(참여)기업 협약서 【서식 제3호】 / 날인 후 스캔 등록	필수제출
4	수행(공급)기업 신청서 【서식 제4호】 / 날인 후 스캔 등록	필수제출
5	사업자등록증(지원(수행)기업) / 스캔파일 등록	필수제출
6	견적서(수행기업별 자체 양식 활용, 세부 산출내역 포함)	필수제출
7	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(신청기업) / 스캔파일 등록 ※ 국세 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에서 발급가능 ※ 지방세 : 정부24(www.gov.kr) 에서 발급가능	필수제출

- * 온라인 접수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압축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첨부 등록
- *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 필수
- * 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누락,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을 발견하는 경우 심사 제외
- ※ 원본서류는 최종 선정기업에 한해 별도 제출 예정(기업별 보관 요망)

- 세부사업별 복수의 수행기업, 공급기업 및 참여기업 참여가능
- 제조업 상생프로젝트지원은 지원사업비의 부가가치세 및 기업부담금(공급가+ 부가가치세)을 참여기업(제조업)이 지원기업(IP서비스 기업)에 사업종료 전까지 별도 지급 후 증빙자료 제출
- 수행기업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전 소재 기업 지정(타 지역소재 기업 지정 시 사유서 제출. (단, IP 검색관리시스템지원은 타 지역 공급기업도 가능)
- 선정결과 발표 이후,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
-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타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